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-11조 제2항 중 "금액으로"를 "금액(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)으로"로 한다.

제6-18조 제2항 중 "금액으로"를 "금액(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)으로"로 한다.

제7-2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7-1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장기손해보험(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한한다) 또는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회사가 순보험료를 출재하는 재보험계약 (이하 "공동재보험계약"이라 한다)

제7-12조의2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 간에 재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형태의 계약(이하 "비례재보험계약"이라 한다)이어야한다.
- ⑨ 제8항에 따른 비례재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인수 받는 보험회사는 제7항에 따른 적격 재보험사이어야 하며, 해당 적격 재보험사가 적격 재보험사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내용을 알게 된 후 1개월 이

내에 해당 계약의 처리 방안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-13조 제3항제1호 중 "책임준비금(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말한다)"를 "책임준비금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보험회사가 재보험사와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으며, 감독원장은 기타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- 1.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계약을 통해 장부상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금액을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보험회사는 이를 선급비용으로서 자산으로 계상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처리하며, 재보험사는 선수수익으로서 부채로 계상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.
- 2.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계약을 통해 장부상 책임준비금 미만의 금액을 재 보험사에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보험회사는 이를 선수수익으로서 부 채로 계상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수익처리하며, 재보험사는 선급비 용으로서 자산으로 계상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 현 행	개 정 안
	, <u> </u>
제6-11조(책임준비금의 적립) ① (생	제6-11조(책임준비금의 적립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	2
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	
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	
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	
6-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<u>금</u>	
<u>액으로</u> 한다. 다만, 보험료적립금이	액(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
영(0)보다 적은 때에는 영(0)으로	로부터 통보된 금액)으로
한다.	
제6-18조(책임준비금의 적립) ① (생	 제6-18조(책임준비금의 적립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	2
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	
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	
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	
	\neg
6-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	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
<u>액으로</u> 한다. 다만, 보험료적립금이	액(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
영(0)보다 적은 때에는 영(0)으로	자로부터 통보된 금액)으로
한다.	
제7-2조(지급여력기준금액) ① ~ ②	제7-2조(지급여력기준금액) ① ~ 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의 금리위험액은 제1호에	3
의한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	
제2호에 의한 보험부채 금리민감액	

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 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(최저 금이위험액을 최저한도로 한다)에 금리역마진위험액을 가산하여 산출 한다. 다만, 생명보험회사 일반계정 과 감독규정 제5-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특별계정을 대 상으로 산출한다.

제7-12조(재보험계약 보고 등) ① 제7-12조(재보험계약 보고 등) ① (생략)

1. ~ 2. (생 략)

<신 설>

제7-12조의2(재보험의 관리) ① ~ 제7-12조의2(재보험의 관리) ① ~ ⑦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--. <단서 삭제>

- (현행과 같음)
 - 1. ~ 2. (현행과 같음)
 - 3. 장기손해보험(순보험료가 위험보 험료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한한 다) 또는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계 약을 제외한 보험회사가 순보험료 를 출재하는 재보험계약 (이하 "공 동재보험계약"이라 한다)
- (7) (현행과 같음)
- ⑧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재보 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 간에 재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 련하여 사전에 일정한 비율을 정하 는 형태의 계약(이하 "비례재보험계 약"이라 한다)이어야 한다.
- ⑨ 제8항에 따른 비례재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인

- 제7-13조(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) ① 제7-13조(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) ① ~ ② (생 략)
 - ③ 보험회사가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재보험자산을 감액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전액 감액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은 차감하여 재보험자산을 감액할 수 있다.
 - 1. 재보험을 받은 해당 보험회사가 1. 재보험을 받은 해당 보험회사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(지 가입한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말한다)
 - 2. (생략)

<신 설>

수 받는 보험회사는 제7항에 따른 적격 재보험사이어야 하며, 해당 적 격 재보험사가 적격 재보험사의 지 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내용을 알 게 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 의 처리 방안을 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
~ ② (현행과 같음)

3	 	 	

- 2. (현행과 같음)
- ④ 보험회사가 재보험사와 공동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계처 리는 다음과 같으며, 감독원장은 기 타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- 1.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계약을 통해 장부상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금액을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경우

그 차액에 대해 보험회사는 이를 선급비용으로서 자산으로 계상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처 리하며, 재보험사는 선수수익으로서 부채로 계상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. 2.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계약을 통해 장부상 책임준비금 미만의 금 액을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보험회사는 이를 선수 수익으로서 부채로 계상하고 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수익처리하

며, 재보험사는 선급비용으로서 자

산으로 계상하여 계약기간에 걸쳐

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.